|  |  |  |
| --- | --- | --- |
| **국무원의 대외개방확대 및 외자적극이용 조치에 관한 통지**  국발[2017]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직속기구 :  외자 이용은 우리나라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이자 개방형 경제체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경제 발전 및 개혁 심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현단계 글로벌 투자와 산업 이전이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글로벌 경제가 심도 있게 융합되고 있으며 경제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고 외자 이용이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중공중앙•국무원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을 심도있게 관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외자를 이용하며 양호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 방관결합(放管結合, 정부의 권한이양 및 관리감독 결합), 서비스 개선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제도적 거래 원가를 절감시키고 상호 윈윈(win-win)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한다.  (1) 개방적인 발전 이념을 바탕으로 뉴 라운드 고수준 대외개방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및 관련 정책•법규를 개정하고 서비스업•제조업•채광업 등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자본이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제조업의 구조전환•업그레이드 및 해외인재의 재중 창업•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가 주도한다.)  (2) 서비스업은 중점적으로 은행계 금융기구•증권회사•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선물회사•보험기구•보험중개기구의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회계감사•건축설계•등급평정 서비스 등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를 개방하며 통신•인터넷•문화•교육•교통운수 등 분야의 질서있는 개방을 추진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가 주도하고 교육부•공업정보화부•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주택도농건설부•교통운수부•문화부•인민은행•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  (3) 제조업은 중점적으로 궤도교통설비 제조, 모터사이클 제조, 에탄올 연료 생산, 유지(油脂) 가공 등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를 취소한다. 채광업은 오일셰일•오일샌드•셰일가스 등 비(非)상규적 오일•가스 및 광물자원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석유•천연가스 분야의 대외합작 프로젝트 심사비준제를 비안(備案)제로 전환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가 주도하며 공업정보화부•국토자원부•국가양식국•국가에너지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4)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자기업에게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정책조치를 동등하게 적용한다. 외국자본이 첨단 제조업, 지능형 제조업, 친환경 제조업 등 분야와 산업디자인, 공학컨설팅, 현대물류, 검사•검측•인증 등 생산성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고 전통 산업을 개조 및 업그레이드시킨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부•상무부•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5) 외국자본이 법률규정에 따라 특허경영의 방식으로 에너지•교통•수리(水利)•환경보호•시정(市政)공공공사 등 기초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관련 지원정책을 외국인투자 특허경영 프로젝트 건설•운영에 동등하게 적용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주택도농건설부•교통운수부•수리(水利)부•인민은행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6) 내•외자기업과 과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연구개발센터•기업기술센터를 설립하고 박사후(博士後) 과학연구 거점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대등(對等)의 원칙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고신기술기업, 연구개발센터 등 특혜정책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동등하게 적용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과학기술부•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상무부•세무총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7) 외국인 고급인재의 재중 창업•발전을 지원한다.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국적의 고급인재가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중국국적의 공민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한다. 외국국적의 고급인재와 그의 배우자•자녀가 복수비자 또는 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과학기술부•공안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외국전문가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2. 보다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8) 각 부서는 외국인투자 정책을 제정함에 있어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평경쟁심사제도를 수립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6]34호)의 규정에 따라 공평경쟁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원칙상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요한 사안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국가의 정책•법규를 엄격히 관철 및 집행하여야 하고 정책•법규 집행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무단 확대시켜서는 아니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9) 법률•법규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외국인투자자의 정보 제공이 확실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서는 내•외자기업의 기준•시한 무차별화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면허•자격 신청을 심사하여야 하며 내•외자기업에 대한 일시동인(一視同仁) 및 내•외자기업의 공평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10) 우리나라 표준화 사업에 대한 내•외자기업의 공평 참여를 촉진시킨다. 표준화 사업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 표준 제개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보강한다. 표준 제개정 전체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표준 제개정 과정에서의 정보공유와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주도한다.)  (11) 정부조달 개혁을 심화하고 공개성•투명성•공평경쟁의 원칙을 실천하며 법률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일시동인(一視同仁)하고 무차별하게 대우하며 내•외자기업이 정부조달 입찰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 (재정부가 주도한다.)  (12) 법률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한다. 지적재산권법 집행 매커니즘을 보완하고 지적재산권법 집행,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및 중재•조정 업무를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대외협력 매커니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국제조직의 중국 내 지적재산권중재조정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상무부•공상총국•국가지적재산권국•국가저작권국이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13)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조달 채널 확대를 지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규정에 따라 메인보드 시장, 중소기업 전문 주식거래시장(中小企業板), 벤처기업 전문 주식거래시장(創業板)에 상장할 수 있고 장외주식거래시장(新三板)에 등록할 수 있으며 기업채권•회사채권•전환가능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비(非)금융기업 부채조달 수단을 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인민은행•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1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본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최저등록자본금 요구를 취소하고 내•외자기업 무차별한 등록자본제도를 실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공상총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3.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를 진일보 강화한다.  (15) 각 지역은 혁신•조율•친환경•개방•공유의 발전이념을 기반으로 지방의 실무 경험과 결부시켜 투자촉진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지방정부가 법에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특혜 정책을 출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취업•경제발전•기술혁신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기업의 투자•운영 원가를 절감시키고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16) 중서부지역•동북지역이 외국인투자산업 이전 사업을 인수하는 것을 지원한다.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 산업 지도목록>을 개정하여 중서부지역•동북지역의 외국인투자 권장류 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서부지역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권장류 산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특혜 정책을 시행한다. 중서부지역•동북지역으로 이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의 산업 이전 및 가공무역 지원을 위한 자금•토지 등 특혜 정책을 누린다. 동부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서부지역•동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신청에 의거하여 사회보험 격지 전출•연결을 지체없이 처리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가 주도하며 공업정보화부•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토자원부•세무총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17)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부지에 관한 지원을 제공한다. 부지 관련 정책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계속해서 집약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장류 외국인투자 공업 프로젝트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토지출양 최저가격 확정 시 프로젝트 소재지의 토지 등급과 대응되는 전국 공업용 부지 최저출양가격 기준의 70%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국토자원부가 주도한다.)  (18) 외국인투자 다국적기업의 인민폐•외국환 자금 집중운영 관리 개혁을 추진한다. 다국적기업이 중국 내에 지역본부 및 구매센터•결제센터 등 기능성 기구를 설립하도록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투자 다국적기업의 인민폐•외국환 자금 집중운영을 허용하며 쌍방향 자금 이동을 촉진시키고 자금사용효율 및 투자 원활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인민은행•국가외환관리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19) 외국인투자기업 외채(外債)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내•외자기업 외채(外債) 관리를 통일화하고 기업 외환 관리를 개선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능력과 편의성을 강화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인민은행•국가외환관리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20) 외국인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을 심화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전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을 전면 실시하고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관리 절차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관리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하나의 창구를 통한 접수, 기한부 처리, 처리진도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며 외국인투자 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을 추진하고 보다 큰 범위로 경험을 확대 및 복제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해관총서•세무총국•공상총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새로운 형세하에서 외자 이용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주동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책임을 강화하며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독촉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제반 정책조치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반 정책조치의 실시와 더불어 보다 개방적이고 편리적이며 투명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외국인투자 및 선진기술•관리경험을 적극 유치하며 외국인투자 규모와 속도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외자 이용의 수준과 품질을 향상시키며 뉴 라운드 고수준 대외개방을 추진하는데 진력하고 개방을 통하여 개혁 및 발전을 촉진시킨다.  국무원  2017년 1월 12일 |  | **国务院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  国发〔2017〕5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利用外资是我国对外开放基本国策和开放型经济体制的重要组成部分，在经济发展和深化改革进程中发挥了积极作用。当前，全球跨国投资和产业转移呈现新趋势，我国经济深度融入世界经济，经济发展进入新常态，利用外资面临新形势新任务。为深入贯彻落实《中共中央 国务院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进一步积极利用外资，营造优良营商环境，继续深化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改革，降低制度性交易成本，实现互利共赢，现将有关事宜通知如下：  一、进一步扩大对外开放  （一）以开放发展理念为指导，推动新一轮高水平对外开放。修订《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及相关政策法规，放宽服务业、制造业、采矿业等领域外资准入限制。支持外资参与创新驱动发展战略实施、制造业转型升级和海外人才在华创业发展。（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牵头）  （二）服务业重点放宽银行类金融机构、证券公司、证券投资基金管理公司、期货公司、保险机构、保险中介机构外资准入限制，放开会计审计、建筑设计、评级服务等领域外资准入限制，推进电信、互联网、文化、教育、交通运输等领域有序开放。（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牵头，教育部、工业和信息化部、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住房城乡建设部、交通运输部、文化部、人民银行、新闻出版广电总局、国家网信办、银监会、证监会、保监会等按职责分工负责）  （三）制造业重点取消轨道交通设备制造、摩托车制造、燃料乙醇生产、油脂加工等领域外资准入限制。采矿业放宽油页岩、油砂、页岩气等非常规油气以及矿产资源领域外资准入限制。石油、天然气领域对外合作项目由审批制改为备案制。（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牵头，工业和信息化部、国土资源部、国家粮食局、国家能源局等按职责分工负责）  （四）外商投资企业和内资企业同等适用“中国制造2025”战略政策措施。鼓励外商投资高端制造、智能制造、绿色制造等，以及工业设计和创意、工程咨询、现代物流、检验检测认证等生产性服务业，改造提升传统产业。（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商务部、质检总局等按职责分工负责）  （五）支持外资依法依规以特许经营方式参与基础设施建设，包括能源、交通、水利、环保、市政公用工程等。相关支持政策同等适用于外资特许经营项目建设运营。（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住房城乡建设部、交通运输部、水利部、人民银行等按职责分工负责）  （六）支持内外资企业、科研机构开展研发合作。支持外商投资企业建设研发中心、企业技术中心，申报设立博士后科研工作站。根据对等原则，允许外商投资企业参与承担国家科技计划项目。外商投资企业同等适用研发费用加计扣除、高新技术企业、研发中心等优惠政策。（国家发展改革委、科技部、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商务部、税务总局等按职责分工负责）  （七）支持海外高层次人才在华创业发展。对持有外国人永久居留证的外籍高层次人才创办科技型企业，给予中国籍公民同等待遇。对外籍高层次人才及其外籍配偶、子女申请办理多次签证或者居留证件的，依法依规提供便利。（科技部、公安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国家外专局等按职责分工负责）  二、进一步创造公平竞争环境  （八）各部门制定外资政策，要按照《国务院关于在市场体系建设中建立公平竞争审查制度的意见》（国发〔2016〕34号）规定进行公平竞争审查，原则上应公开征求意见，重要事项要报请国务院批准。各地区各部门要严格贯彻执行国家政策法规，确保政策法规执行的一致性，不得擅自增加对外商投资企业的限制。（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国务院部门按职责分工负责）  （九）除法律法规有明确规定或确需境外投资者提供信息外，有关部门要按照内外资企业统一标准、统一时限的原则，审核外商投资企业业务牌照和资质申请，促进内外资企业一视同仁、公平竞争。（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国务院有关部门按职责分工负责）  （十）促进内外资企业公平参与我国标准化工作。进一步深化标准化工作改革，提高标准制修订的透明度和开放度。推进标准制修订全过程信息公开，强化标准制修订过程中的信息共享和社会监督。（国家标准委牵头）  （十一）深化政府采购改革，坚持公开透明、公平竞争原则，依法依规对外商投资企业在我国境内生产的产品一视同仁、平等对待，促进内外资企业公平参与政府采购招投标。（财政部牵头）  （十二）依法依规严格保护外商投资企业知识产权。健全知识产权执法机制，加强知识产权执法、维权援助和仲裁调解工作。加强知识产权对外合作机制建设，推动相关国际组织在我国设立知识产权仲裁和调解分中心。（商务部、工商总局、国家知识产权局、国家版权局等按职责分工负责）  （十三）支持外商投资企业拓宽融资渠道。外商投资企业可以依法依规在主板、中小企业板、创业板上市，在新三板挂牌，以及发行企业债券、公司债券、可转换债券和运用非金融企业债务融资工具进行融资。（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人民银行、证监会等按职责分工负责）  （十四）深化外商投资企业注册资本制度改革。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取消外商投资公司的最低注册资本要求，落实内外资企业统一的注册资本制度。（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工商总局等按职责分工负责）  三、进一步加强吸引外资工作  （十五）各地区要按照创新、协调、绿色、开放、共享的发展理念，结合地方实际，积极开展投资促进活动。允许地方政府在法定权限范围内制定出台招商引资优惠政策，支持对就业、经济发展、技术创新贡献大的项目，降低企业投资和运营成本，依法保护外商投资企业及其投资者权益，营造良好的投资环境。（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按职责分工负责）  （十六）支持中西部地区、东北地区承接外资产业转移。修订《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扩大中西部地区、东北地区鼓励外商投资产业范围。对符合条件的西部地区鼓励类产业外商投资企业实行企业所得税优惠政策。向中西部地区、东北地区转移的外商投资企业享受国家支持产业转移与加工贸易的资金、土地等优惠政策。对东部地区外商投资企业转移到中西部地区、东北地区的，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要依申请及时办理社会保险异地转移接续。（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牵头，工业和信息化部、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国土资源部、税务总局等按职责分工负责）  （十七）支持外商投资项目用地。外商投资企业与内资企业同等适用相关用地政策。继续对集约用地的鼓励类外商投资工业项目优先供应土地，在确定土地出让底价时可按不低于所在地土地等别相对应全国工业用地出让最低价标准的70%执行。（国土资源部牵头）  （十八）推进外资跨国公司本外币资金集中运营管理改革。积极吸引跨国公司在我国设立地区总部和采购中心、结算中心等功能性机构，允许外资跨国公司开展本外币资金集中运营，促进资金双向流动，提高资金使用效率和投资便利化水平。（人民银行、国家外汇局等按职责分工负责）  （十九）完善外商投资企业外债管理制度。统一内外资企业外债管理，改进企业外汇管理，提高外商投资企业境外融资能力和便利度。（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人民银行、国家外汇局等按职责分工负责）  （二十）深化外商投资管理体制改革。推进对外商投资全面实施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模式，简化外商投资项目管理程序和外商投资企业设立、变更管理程序。推进审批环节并联办理，缩短海关登记、申领发票等环节办理时间。加大电子政务建设力度，推行一口受理、限时办结、进度可查询，提升外商投资管理信息化水平。推进自由贸易试验区建设，在更大范围推广复制经验。（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海关总署、税务总局、工商总局等按职责分工负责）  各地区、各部门要充分认识新形势下做好利用外资工作的重要意义，高度重视，主动作为，强化责任，密切协作，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要会同有关部门加强督促检查，确保各项政策措施落到实处。结合各项政策措施实施，大力创造更加开放、便利、透明的营商环境，积极吸引外商投资以及先进技术和管理经验，稳定外商投资规模和速度，提高利用外资水平和质量，着力推动新一轮高水平对外开放，以开放促改革、促发展。    　　　　　　　　　　　　　　 国务院　　　　　　　　　　　2017年1月12日 |